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2018년 11월 21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8년 10월 17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10월 29일
- 라. 상정일 :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18년 11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국장 하철승)

가. 제안이유

-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우리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 서울특별시세 등을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납부하고, 최근 8년간 계속하여 연 2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도록 개정함.
- 2)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 완료
- 다.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의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¹⁾ 8년간 납기 내 납부한 자를 규정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²⁾에 따라 다른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(안 제2조제1호)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1. 모범납세자 :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“지방세”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</p>	<p>1. 모범납세자: 선발기준일 현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</p> <p>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</p> <p>나.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</p>

- 1) 취득세,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재산분에 한함(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). 연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세목(재산세, 자동차세)은 1건으로 봄(예시: 재산세 주택분을 7월(1/2)과 9월(1/2)에 납부하더라도 1건임).
- 2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“지방세”란 특별시세, 광역시세, 특별자치시세, 도세,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·군세, 구세(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
- 서울시는 본 조례를 근거로 모범·전자·유공 납세자³⁾를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왔으며,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증명서 발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및 시금고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, 수수료 면제,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2018년에는 22만 3,021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음.

〈 최근 5년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 〉

(단위 : 명)

납세자	'18년	'17년	'16년	'15년	'14년
모 범	223,021	293,552	281,032	271,858	261,230
유 공	191	196	185	180	97

※ '18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*으로 전년대비 선발인원 축소

*변경前: 최근3년 체납 없이,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납부

- 서울시 체납은 없으나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이 있는 시민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우려가 있고, 매년 행정안전부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체납조회에 비협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모범납세자 선발시 체납 조회 기준 지방세를 '최근 10년간 시세 및 구세'에서 "선발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"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 규정(안 제2조제1호)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)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선발)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.

1. 모범납세자 :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"지방세"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2.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3.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

-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서울시 체납이 없는 경우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나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선정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.

- 다만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통념상 부적합을 이유로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면, 2007년 동 조례의 제정 당시 ‘납세의무자 자진납세의식 고취’를 향상시키기 위한 본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범납세자 요건에 ‘국세의 체납도 없는 자’까지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- 그 밖에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의 개정 사항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임.
 - ※ 안 제1조 : “구세” → 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”
 “고취시켜” → “고무하여”
 “기여함” → “이바지함”
 - ※ 안 제2조 : “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”
 → “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”
 “지방세를” → “서울특별시세 등을”
 “유공납세자 :” → “유공납세자:”
 - ※ 안 제3조 : “범위 내” → “범위”
 - ※ 안 제4조 : “제2항과” → “제2항 및”
 “국세·타” → “국세 및 다른”
 - ※ 안 제5조 : “시장” → “서울특별시장”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우리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추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중에 서울특별시세 등을 10년간 체납사실 없이 납부하고, 최근 8년간 계속하여 연 2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도록 개정
- 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세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”로, “고취시켜”를 “고무하여”로, “기여함”을 “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모범납세자: 선발기준일 현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
- 나.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

제2조제2호 중 “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”을 “전자납세자: 서울특별시세 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유공납세자 :”를 “유공납세자: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세”를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과”를 “제2항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세·타”를 “국세 및 다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,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<u>고취시켜</u>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<u>기여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선발)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발한다.</p> <p>1. 모범납세자 : <u>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“지방세”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무하여</u> ----- ----- <u>이바지함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선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모범납세자: <u>선발기준일 현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</u>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<u>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“서울특별시세 등”이라 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</p> <p>3.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</p> <p>4. 삭 제</p> <p>제3조(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, 전자고지·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의 배제) 공공기관의</p>	<p>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</p> <p>나.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</p> <p>2. 전자납세자: 서울특별시세 등을 -----</p> <p>3. 유공납세자: -----</p> <p>제3조(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서울특별시세 등 ----- 범위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의 배제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3조제4항의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, <u>제2항과</u> 제4항의 지원내용을 배제한다.</p> <p>1. <u>신</u>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</p> <p>2. <u>국세·타</u>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</p> <p>제5조(심의) 위원회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<u>시장</u>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항</u> 및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국세 및 다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심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서울특별시장</u> ----- -----</p>

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(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)이 연 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재무국 세무과 세무6급 박배호 (☎ 2133-3388)